

# 재정지원사업 ERP 입력 매뉴얼(사업장용)

## (사고사망등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1 자금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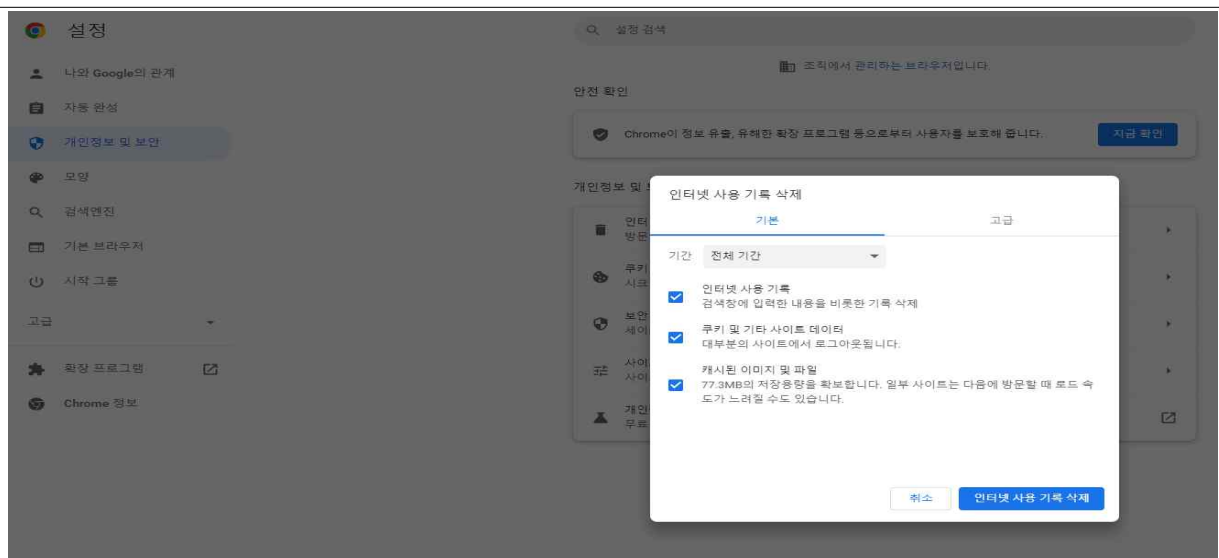
○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온라인 신청

※ 브라우저는 호환성 등의 사유로 크롬(Chrome) 사용

※ 시작 전 팝업허용 및 쿠키삭제



### 1. 크롬 접속 → 우측 상단(:)의 “설정”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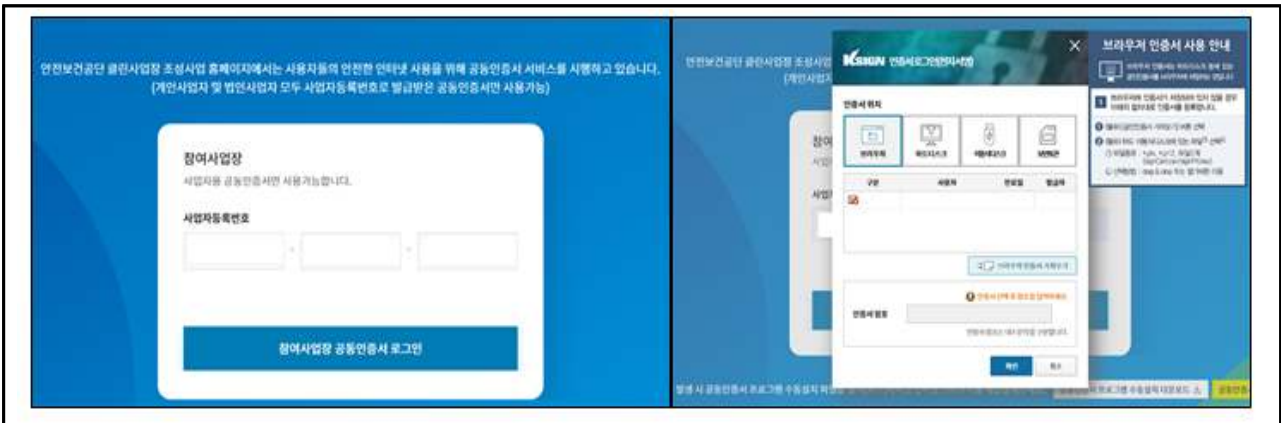
### 2. “개인정보 및 보안” 탭 클릭 → 전체 체크 후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기간: 전체기간) → 크롬 화면창 닫은 후 재접속

# 1. 로그인

## ① 참여사업장 로그인 클릭



##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 공인인증서 로그인 오류 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클린사업 홈페이지 신청 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게시글 번호: 2) →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의 조치방법에 따라 설정 후 **브라우저 재실행**

## 2. 신규사업신청

### ① 상단 참여사업장 탭의 “사업신청” 클릭

### ②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클릭

### ③ 신규 팝업의 왼쪽 “고위험개선” 또는 “스마트안전장비” 클릭

### 3.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 ① 참여사업장 사업주 동의사항 등 각각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체크
- ②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각각 내용을 숙지한 후 체크
- ③ “사업신청” 클릭

##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참여사업장 사업주 동의사항**

참여사업장 사업주 동의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관련사업장 조사항목」 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필요한 설비·공사의 구매 과정 또는 구매 이후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본 내용에 이의가 없으며 동의하는 경우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5년)
-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자부담금 배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①  (전체동의)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③

사업신청

취소

- ④ 사업참여 동의서명 팝업에 서명(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서명) 날인 후 “저장” 클릭
- ※ 사업주 성명을 정자로 입력 및 서명란의 대표자 정보가 다를 경우 실제 대표자 성명 기재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자부담금 배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④  (전체동의)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참여 동의(6중\*) 서명 저장** ✕

\* 6중: ①참여사업장 사업주 동의사항, ②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중소기업 지원사업 동행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정령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사업주), ⑤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⑥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사업주 성명을 반드시 정자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담당자 성명 등으로 서명 시 무효처리)

※ 대표자 변경, 공동 대표자 등으로 서명란에 다르게 표출될 경우 실제 대표자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초기화

저장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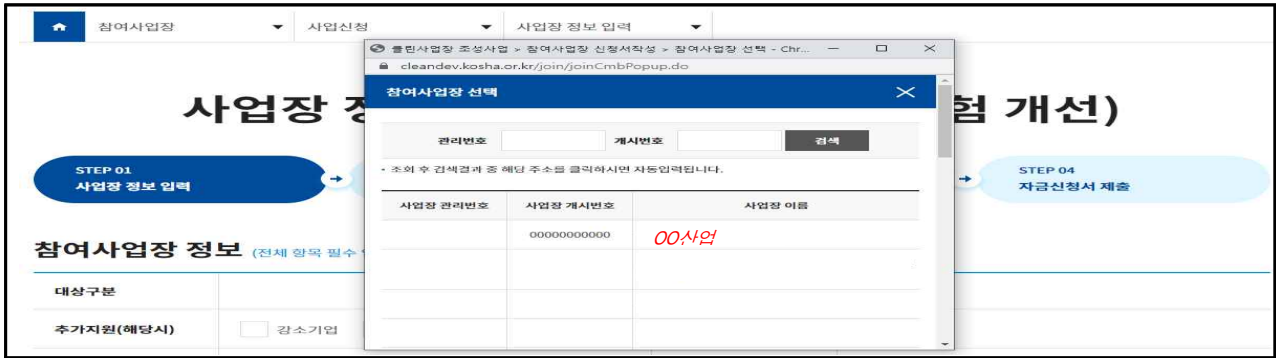
#### 4. 사업장 정보 입력

① 참여사업장 선택: 사업을 진행할 사업장관리번호(개시번호)를 클릭(해당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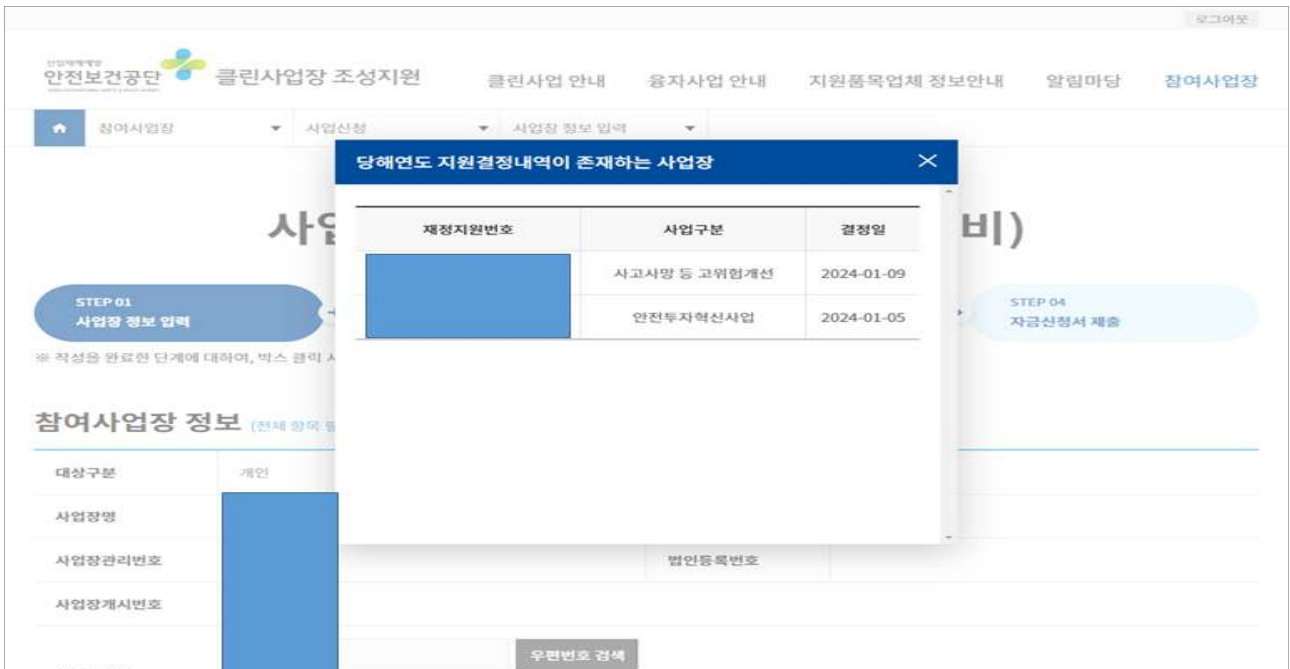
※ 근로자를 고용(50인 미만\*)하고, 산재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만 진행가능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건설현장(40001~9)을 선택할 경우 진행불가,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 건설업본사(90515)는 진행가능



※ 당해연도 공단 보조지원 사업(클린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용자, 안전동행지원사업 등) 간의 중복 결정내역 확인 시 아래와 같이 검증 결과 팝업 생성(사업간 당해연도 자금결정 중복 불가)



② 참여사업장 정보, 대표자 정보 입력

※ 추가지원 조건(보조금 한도 3천만원에서 해당 시 1천만원 증액)에 해당할 경우 항목에 체크, 이후 단계에서 증빙첨부

강소기업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고용증가 사업장	과거 지원시점 대비 고용인원 증가(최초지원 사업장 해당없음)
고위험업종 사업장	대상 업종코드 추후 안내 예정

③ 참여사업장 담당자 정보 입력

※ 이후 담당자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 상태 SMS 발송)

④ “다음단계 이동” 클릭

**참여사업장 정보** (전체 항목 필수 입력)

---

대상구분  법인

추가지원(해당시)  강소기업  위험성평가  고용증가  고위험업종

**대표자 정보** (전체 항목 필수 입력)

---

성명(생년월일)/성별  남  여      휴대폰번호  -  -

**참여사업장 담당자 정보** (전체 항목 필수 입력)

---

성명 / 직책  /       휴대폰번호  -  -

이메일  @

\* 담당자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 신청 결과 등이 SMS로 발송됩니다. 번호가 정확하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④ 다음단계 이동    취소

5. 관련 파일 첨부(사업별 첨부서류 상이함에 따라 세부 공고 참조)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② (해당 시) 보조금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증빙자료 첨부

③ (해당 시) 추가지원 증빙자료 첨부 : 4의② 참고

④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첨부(50인이상 필수) ⑤ “제출” 클릭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필수서류 첨부

**관련 파일 첨부** (\* 필수 입력)

---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10.0 MB

---

② 해당시] 보조금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증빙자료(클린사업>알림 파일>지역별문의처 참고) + 10.0 MB

---

③ [해당시] 추가지원(고용증가, 위험성평가, 고위험업종, 강소기업) + 10.0 MB

---

④ [해당시]중소기업확인서(50인이상) + 10.0 M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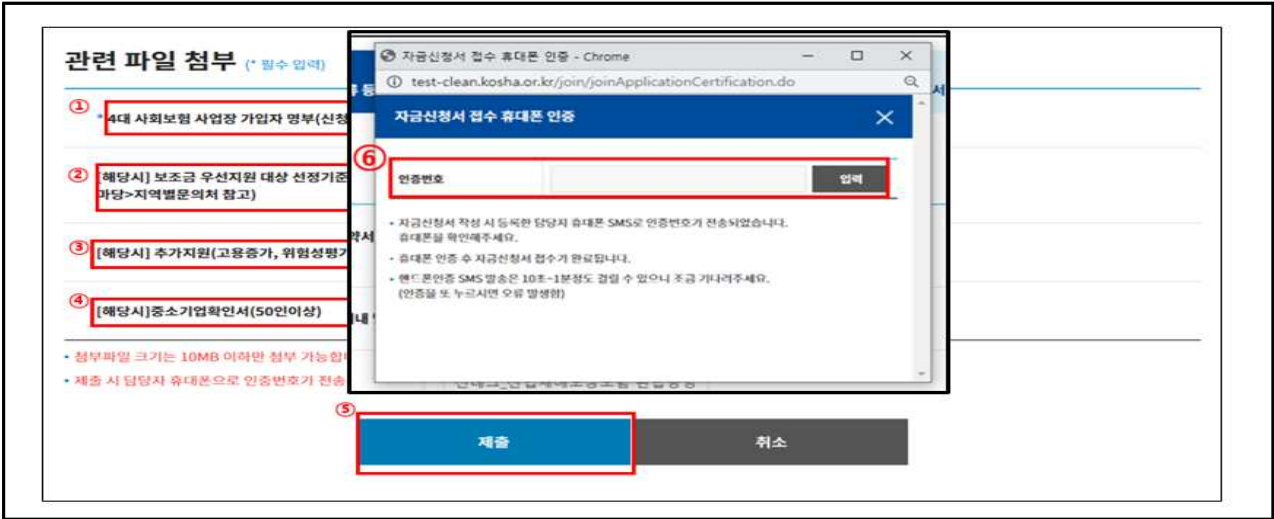
• 첨부파일 크기는 10MB 이하만 첨부 가능합니다.

• 제출 시 담당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고, 인증번호 확인이 완료되어야 정상 접수됩니다.

⑤ 제출    취소

⑤ 자금신청서 접수 휴대폰 인증: 4의③ 참고

※ 참여사업장 담당자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



### 6-1. 자금신청서 작성

① 업체/모델 선정 : “추가” 클릭(품목이 여러개일 경우 반복수행)



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규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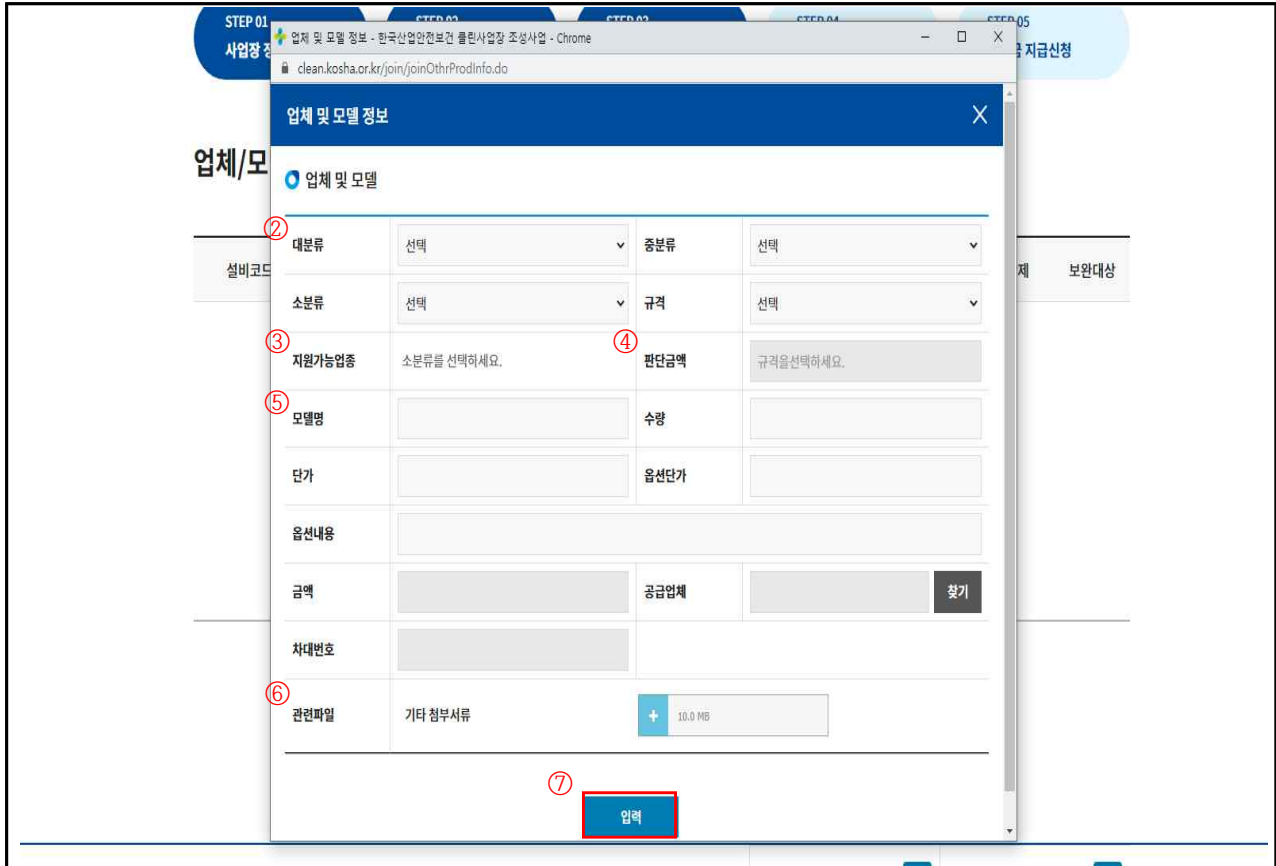
③ 지원가능업종 자동표출

진행 가능(지원대상 업종)	진행 불가능(지원대상 아닌 업종)
“지원가능합니다” 표출	“지원 불가능합니다” 표출

④ 판단금액 확인 ⑤ 모델명, 수량, 단가 등 입력

⑥ 견적서, 카탈로그, 가격자료 등 기타 서류 첨부

⑦ “입력” 클릭



⑧ “자금신청서 작성” 클릭

## 6-2. 자금신청서 제출

① 최종 신청정보 확인 후 “자금신청서 제출” 클릭하여 신청 완료





## 7. 신청내역 및 진행상태 등 확인

선택	No	신청사업명	사업장(현장)명	작성일	단계	진행상태	비고
<input type="checkbox"/>	1				04	자금신청서 제출	신청완료

① “진행상태” 및 “비고” 를 통해 진행정도 확인 가능

사업단계	내용	진행상태	비고
자금신청서 제출	사업장→공단으로 신청서 제출완료	자금신청서 제출	신청완료
심사중	공단담당자가 자금신청서를 검토중	자금신청서 제출	심사중
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로 결정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신청
반려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함	-	반려

※ 결정통보 : 신청사업의 검토를 완료, 심사를 통해 보조금 및 신청자 부담금액 결정

## 8. 보조금 결정통보 내용 확인

① 결정통보서 등 확인: 신청사업을 체크한 후 “결정통보서 및 결정입력사항 조회” 클릭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 시 참여사업장 담당자에게 SMS(문자) 자동발송

※ 해당 버튼 클릭 시 공단 직원이 업로드한 공문을 직접 확인 가능

선택	No	신청사업명	구분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장(현장)명	작성일	단계	진행상태	비고
<input type="checkbox"/>	6	사고시망 등 고위험 개선	오프라인		2024-01-19	04	자금신청서 제출	신청완료
<input type="checkbox"/>	5	스마트 안전장비	온라인		2024-01-15	03	업체 및 모델 선정	업체모델선정
<input type="checkbox"/>	4	스마트 안전장비	온라인		2024-01-09	04	자금신청서 제출	심사중
<input type="checkbox"/>	3	스마트 안전장비	오프라인		2024-01-09	04	자금신청서 제출	신청완료
<input type="checkbox"/>	2	사고시망 등 고위험 개선	온라인		2024-01-08	05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신청
<input type="checkbox"/>	1	사고시망 등 고위험 개선	오프라인		2024-01-05	04	자금신청서 제출	신청완료

결정통보서 및 결정입력사항 조회

결정내역확인

투자계획변경

② 신청자부담금액 및 결정금액 확인

용어	내용	예시
소요금액	사업주가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금액	1,200천원(3,000kcal/h)
판단금액	가격테이블, 시장조사를 통하여 공단이 책정한 금액	1,138천원으로 조정
결정금액	판단금액의 70%(천원미만 절사)	796천원
신청자 부담금액	소요금액 - 결정금액	1,200 - 796 = 404천원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

융자금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서

(제11조제1항·제23조제1항, 제33조,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신청자

재정지원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	사업계시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결정내역 (지급보증 보험증권 만료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로부터 4년간) (단위: 원)

설비명	수량	소요금액	판단금액	신청자 부담금액	결정금액(d)			
		(a)	(b)	(c)	수량	계	융자	보조
계								

③ 결정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설비투자 진행, 현장설치 완료

※ 보조금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

2 지원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완료 확인요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1. 투자완료 및 지급신청

① “보조금 지급신청” 클릭 : 투자완료 확인요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작성년도 2023

삭제(제출전 정보) 신규사업신청

선택	No	신청사업명	사업장(현장)명	작성일	단계	진행상태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스마트 안전장비			05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신청

② 항목 체크 후 “선택항목 계좌정보입력” 클릭

### 보조금 지급 신청

물류사업장 조형사업 신청 단계

STEP 01  
사업장 정보 입력

STEP 02  
사업장이  
관련파일첨부

STEP 03  
업체/모델 선정

STEP 04  
자금신청서 제출

STEP 05  
결정통보

STEP 06  
보조금 지급 신청

STEP 07  
보조금 입금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 단계

모형 및 구역	판매업체	결정금액				신청금액	계좌정보			
		수량	계	유자금	보조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input type="checkbox"/>										

**관련 파일 첨부** (\* 필수 입력)

계좌정보를 모두 입력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투자계획안로 연장신청

② 선택항목 계좌정보입력

보조금지급 신청

③ 입금은행정보 입력 : 보조금을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를 입력 ④ “저장” 클릭

④ 산업대분류 선택

⑤ 등록구분 선택 후, ⑥ “저장” 클릭하여 계좌정보 입력

#### 보조금 지급신청 ✕

※ 예금주는 15자리 이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③ <b>입금은행 정보</b>	은행명	--선택해주세요--
	계좌번호	
	예금주	
보조금지급 신청금액	결정금액	원
	신청금액	원
④ <b>산업대분류</b>	--선택해주세요--	
⑤ <b>등록구분</b>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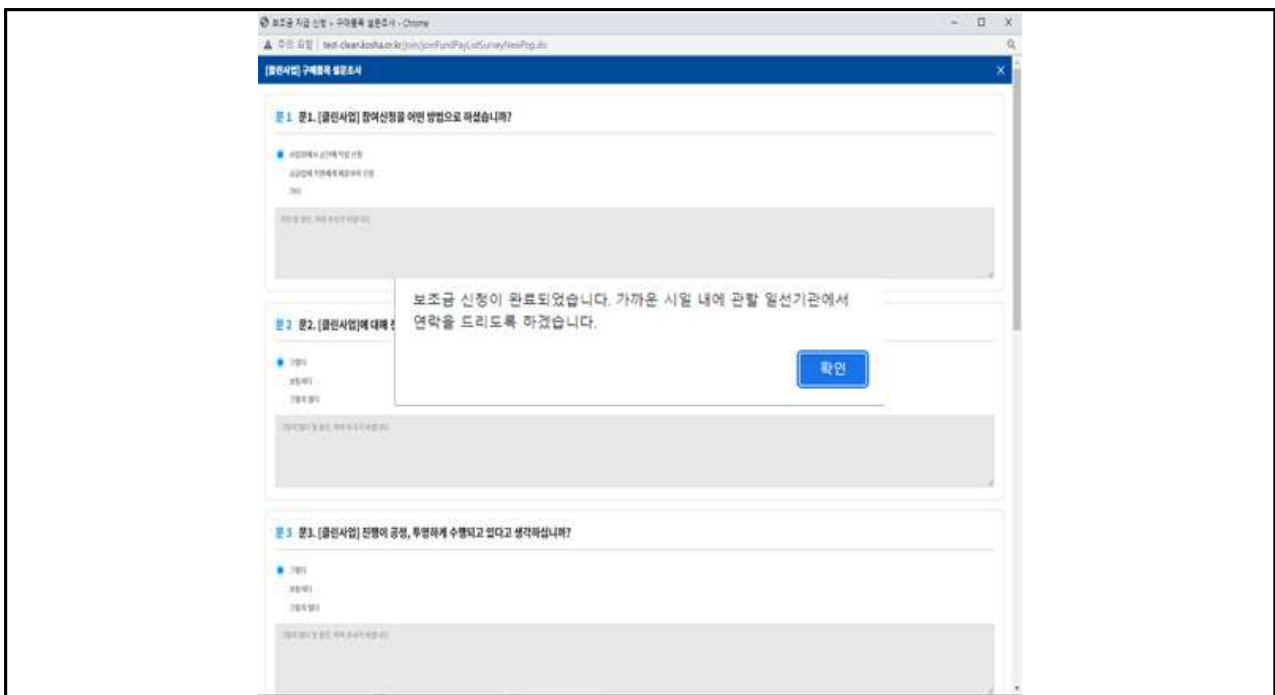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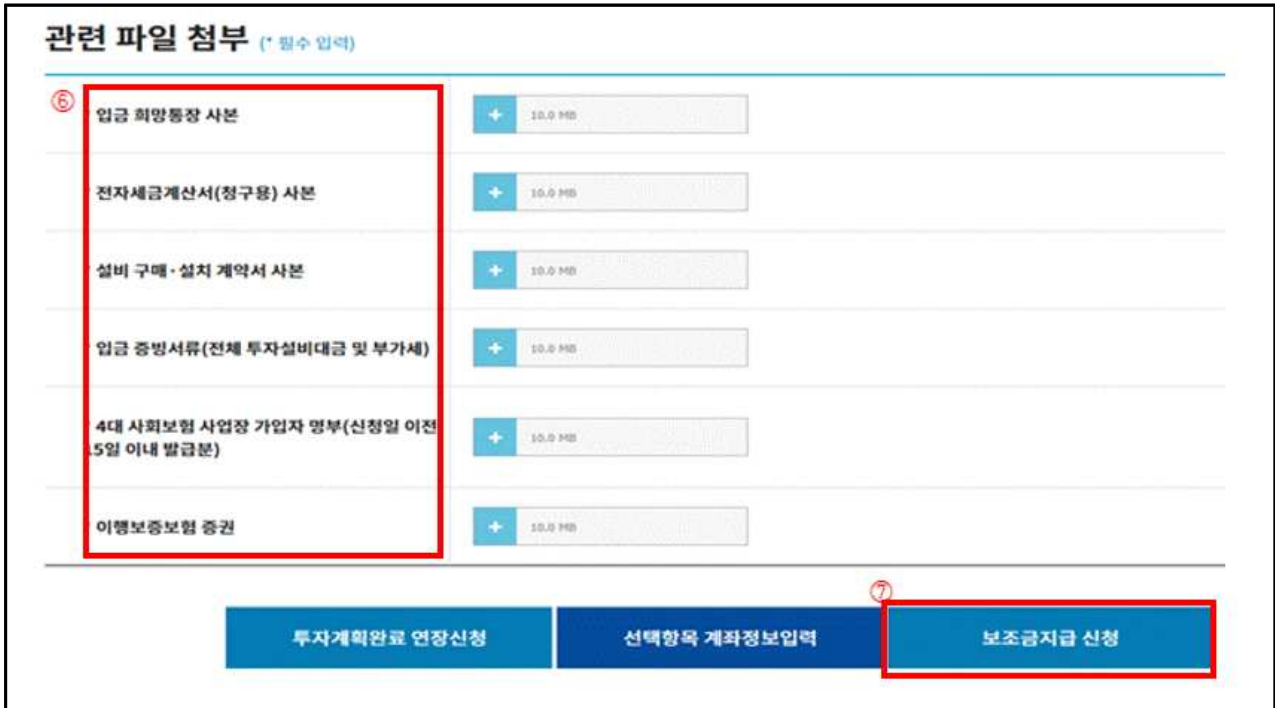
※ 계좌번호 및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는 "-" 없이 입력해주세요.

⑥  
저장

닫기

⑥ 관련파일 첨부(사업별 첨부서류 상이함에 따라 세부 공고 참조)

- ⑦ “보조금지급 신청” 클릭
- ⑧ 설문조사 완료 후, 투자완료 요청 및 지급신청 완료
- ⑨ 공단담당자 방문 확인 후 보조금 지급처리



## 2. 보조금 입금 확인

- ① 지급일정에 따라 신청계좌로 보조금 입금
  - ※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보조금 지급일정 확인(클린사업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② “보조금 입금확인” 클릭



③ 입금내역(입금액, 입금일 등) 확인

※ 보조금지급요청 정보에서 공단 직원이 업로드한 공문(보조금 지급예정 알림)을 직접 확인 가능

### 보조금 입금 확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신청 단계

보조금 지급 신청 단계

STEP 01  
사업장 정보 입력

STEP 02  
사업참여  
관련파일첨부

STEP 03  
업체/모델 선정

STEP 04  
자금신청서 제출

STEP 05  
결정통보

STEP 06  
보조금 지급 신청

STEP 07  
보조금 입금 확인

진행상황	입금완료

#### 입금내역

번호	은행정보	입금액	입금일
1	[REDACTED]		2024-01-18

#### 보조금지급요청 정보

첨부파일 [REDACTED].JPG 3

# 별첨

##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98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9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26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81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6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35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35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5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1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63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3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5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6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13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38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1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42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5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9